



노스캐롤라이나 영유아 프로그램  
아동 및 가족 권리 고지



조기 개입 부서  
아동 및 가족 복지부  
NC 보건복지부  
(919) 707-5520

2013 년 4 월 | 2020 년 12 월 | 2022 년 5 월 | 2023 년 10 월 | 2024 년 7 월

[www.ncdhhs.gov/itp-beearly](http://www.ncdhhs.gov/itp-beearly)에서 추가 사본을 다운로드하세요

# 노스캐롤라이나 영유아 프로그램

## 연락처 정보

내 지역 아동 발달 서비스 기관(CDSA):

---

CDSA 주소: \_\_\_\_\_

---

CDSA 전화번호: \_\_\_\_\_

CDSA 팩스 번호: \_\_\_\_\_

담당 조기 개입 서비스 코디네이터(EISC):

---

조기 개입 서비스 코디네이터 전화번호: \_\_\_\_\_

*기타 연락처 정보*

주소: \_\_\_\_\_

---

이메일: \_\_\_\_\_

휴대전화: \_\_\_\_\_

참고 사항:

# 노스캐롤라이나 영유아 프로그램

## 아동 및 가족 권리 고지

노스캐롤라이나 영유아 프로그램의 아동 및 가족 권리 고지는 연방법인 장애인 교육법(IDEA)에 정의된 대로 가족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IDEA의 파트 C는 자격을 갖춘 영유아(출생부터 3세가 될 때까지)를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IDEA의 파트 C 시스템을 조기 개입 프로그램 또는 영유아 프로그램(ITP)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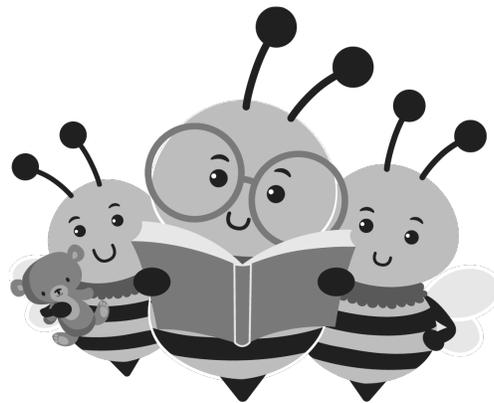
노스캐롤라이나 영유아 프로그램(ITP)의 주관 기관은 NC 보건복지부, 아동 및 가족 복지부의 조기 개입 부서입니다. 지역 수준에서는 조기 개입 부서의 아동 발달 서비스 기관(CDSA)이 영유아 프로그램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관리, 감독 및 모니터링합니다. 주 전체에 걸쳐 영유아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CDSA가 16개 있습니다. CDSA는 단일 또는 다중 카운티 학군 지역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100개 카운티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연방법 및 규정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한 공식적인 고지입니다. 이 문서 내 용어 중 몇 가지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단어는 본 문서에서 처음 나올 때 정의하고, 다른 단어는 본 문서의 마지막에 있는 용어집에서 정의합니다. 용어집에 정의되어 있거나 문서에 나온 단어가 본문에 나올 시 굵은 글씨로 표시됩니다.

귀하의 가족과 협력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 코디네이터(EISC)는 귀하가 귀하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리소스와 자료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목차

소개 .....	1
사전 고지.....	2
부모의 동의.....	2
기록 검토.....	3
정보의 기밀성.....	4
분쟁 해결.....	5
중재 .....	5
적법 절차.....	6
주정부 불만 사항 .....	7
대리 부모.....	9
용어집 .....	10







## 소개

노스캐롤라이나 영유아 프로그램(NC ITP)은 의뢰부터 시작하여 아동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 및 제공하는 조기 개입 절차의 각 단계에서 가족 참여를 극대화하고 부모의 동의(허가)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C ITP 는 장애인 교육법(IDEA)이라는 연방법의 파트 C 에 설명된 국가적 조기 개입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규정(연방 규정집 34 CFR 파트 303 에 설명됨)이 NC ITP 에 적용됩니다.

NC ITP 에는 ITP 에 추천되거나 등록된 아동과 그 부모의 프로그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34 CFR 303.400-438 에 명시된 연방 규정에 따라 정의된 절차적 보호 조치와 34 CFR 303.430-438 에 명시된 분쟁 해결 옵션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 권리 문서는 연방 파트 C 규정에 정의된 대로 아동과 가족의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공식 고지입니다.

NC ITP 에 참여하는 것은 귀하와 귀하 가족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NC ITP 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아동의 의료 또는 기타 기록을 바탕으로 아동에게 확정된 질환이 없거나 확정된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 다학제 **평가**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기회, 그리고 자격을 갖춘 경우 추천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45 일 이내에 **사정** 및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 개발을 위한 기회.
- NC ITP 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 IFSP 에 서비스가 추가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IFSP 에 명시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족에게 무료로 평가, 사정, IFSP 개발, 서비스 조정 및 절차적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
- 적격성 결정, 사정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
- 모든 IFSP 회의에 대한 서면 초대장을 받고 참여할 권리.
-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배치(아동이 서비스를 받는 위치) 또는 아동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변경이 제안되거나 거부되기 10 일(달력일 기준) 전에 사전 서면고지를 받을 권리.
- 아동의 발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적합한 최대 범위 내에서 아동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에 대한 권리.
- 아동의 조기 개입 기록의 초기 사본을 무료로 받을 권리.
- 조기 개입 기록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할 권리.
- 각 IFSP 회의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격성 결정, 아동 사정, 가족 사정 및 IFSP 를 위한 각 평가의 사본을 무료로 받을 권리.
-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적격성, 배치(아동이 서비스를 받는 위치)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
- 영유아 프로그램 정책에 따른 모든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중재**의 기회.
- 주정부 기관, 지역 기관 또는 개인 제공자가 연방 또는 주정부 파트 C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정부 불만 사항**을 제기할 권리.
- 불만 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권리.

이러한 일반적인 권리 외에도 귀하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된 NC ITP(파트 C, 하위 파트 E)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고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전 고지

NC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기 개입 부서의 아동 발달 서비스 기관(CDSA)을 통해 달력일 기준 10 일 전에 서면으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원하는 경우 달력일 기준 10 일 이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에 대한 신원 확인, 평가 또는 배치(아동이 서비스를 받는 위치) 또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의 개시 또는 변경을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서면 고지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제안되거나 거부되는 조치.
-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이유.
- 해당 조치에 대해 NC ITP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보호 조치.
- 불만 사항 제기 방법 및 절차 일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NC ITP 불만 사항 처리 절차. (이 문서의 **분쟁 해결** 섹션을 참조하세요.)

고지는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의 모국어 또는 귀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국어나 기타 의사소통 수단이 문자 언어가 아닌 경우, CDSA 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고지는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수단으로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귀하에게 번역을 제공합니다.
- 귀하가 고지를 이해합니다.
-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 난청, 시각 장애가 있거나 문자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의사소통 수단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부모의 동의

동의를 다음을 의미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구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통보받았습니다. 정보는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귀하의 모국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구하는 활동의 제공을 서면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며, 동의에는 활동에 대한 설명과 공개될 기록(있는 경우) 및 기록을 제공할 사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귀하는 동의하는 것이 귀하의 자발적인 결정이며 언제든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의가 철회되기 전에 발생한 조치에는 동의 철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점에 서면 동의를 요청받아야 합니다.

- 아동에 대한 평가 및 사정이 실시되기 전.
- 조기 개입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 공공 혜택이나 보험 또는 민간 보험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기 전.
-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연방 파트 C(34 CFR 303.414) 규정 및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34 CFR 99.31)에서는 개인 식별 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FERPA(34 CFR 99.31)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파트 C 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때 계약자 또는 제공자의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합니다.

- 파트 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개인 식별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아동의 이름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름.
- 아동 또는 아동 가족의 주소.
- 아동이나 본인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 아동의 신원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기타 정보 목록.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FERPA에 따라 해당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귀하의 동의 없이 아동의 조기 개입 기록 정보를 다른 기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FERPA 및 IDEA 파트 C에 따라 NC ITP는 귀하의 동의 없이 아동의 이름과 생년월일, 귀하의 연락처 정보(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포함)를 아동이 거주하는 주정부 교육 기관 및 지역 교육 기관에 공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IDEA 파트 B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춘 모든 아동을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평가, 사정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NC ITP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귀하가 평가, 사정 또는 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아동이 평가, 사정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또한 NC ITP에 추천되거나 해당 자격을 갖춘 아동의 부모로서, 다른 조기 개입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동 또는 다른 가족에게 제공되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기 개입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음에 서비스를 수락한 후에 다시 서비스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기록 검토

다음 섹션에 설명된 정보의 기밀성 절차에 따라, 귀하는 프로그램에서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모든 조기 개입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록은 선별, 평가, 사정, 적격성 결정, IFSP 개발 및 구현,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아동의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불만 사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의 조기 개입 기록이 포함됩니다.

**접근 권한** - 귀하가 아동의 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CDSA는 필요한 지체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 후 달력일 기준 10일을 넘기지 않고 귀하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CDSA는 IFSP에 관한 모든 회의 또는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신원 확인, 평가, 배치 또는 제공과 관련된 심리에 앞서 요청을 준수할 것입니다.

조기 개입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조기 개입 기록의 설명 및 해석에 관한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 CDSA로부터 응답을 받을 권리.
-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조기 개입 기록 사본을 CDSA에 제공할 것을 요청할 권리(이러한 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조기 개입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
- 귀하를 대신하는 사람이 조기 개입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

CDSA에서는 후견인, 별거 및 이혼과 같은 상황을 관할하는 해당 주법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는 한, 귀하에게 아동과 관련된 조기 개입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접근 기록** - 각 CDSA는 조기 개입 기록에 접근한 개인에 대한 기록(부모 및 CDSA의 승인된 직원의 접근 제외)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름, 접근 권한 부여 날짜, 개인이 조기 개입 기록을 사용하도록 승인된 목적이 포함됩니다.



조기 개입 기록에 두 명 이상의 아동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귀하는 아동과 관련된 정보만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거나, 아동에 대한 특정 정보에 관해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DSA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조기 개입 기록의 유형과 위치를 목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록 수수료** - CDSA는 수수료가 조기 개입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경우 조기 개입 기록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DSA는 각 IFSP 회의가 끝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각 평가서, 아동 사정, 가족 사정 및 IFSP의 사본을 무료로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CDSA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찾아내는 데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 수정** -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수집, 유지 관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하는 조기 개입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귀하 또는 아동의 사생활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CDSA 또는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참여 기관에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SA는 귀하의 요청을 접수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귀하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CDSA가 귀하의 요청에 따른 정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CDSA는 거부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고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부서에서는 조기 개입 기록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심리는 34 CFR 99.22에 있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절차적 보호 조치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노스캐롤라이나 영유아 프로그램 정책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CDSA는 해당 정보를 그에 따라 수정하고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심리 결과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아동의 조기 개입 기록에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적고, 참여 기관/제공자와 의견이 다른 이유를 명시한 성명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아동의 조기 개입 기록에 기재된 모든 설명은 조기 개입 기록 또는 분쟁 부분(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기록 부분)이 CDSA에 의해 유지되는 한 아동의 조기 개입 기록의 일부로서 CDSA가 보관해야 합니다. CDSA가 아동의 조기 개입 기록이나 분쟁 부분을 어느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설명도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정보의 기밀성

이 섹션에 설명된 기밀성 절차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에 적용됩니다.

- 영유아 프로그램이나 **참여 기관**에서 수집, 사용 또는 유지 관리하는 조기 개입 기록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및
- 아동이 조기 개입 서비스에 추천된 시점부터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적용된 개인 식별 정보.

## 기밀성에 대한 고지

NC 영유아 프로그램은 아동이 CDSA에 의뢰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밀성 요건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적절한 고지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가 보관되는 아동에 대한 설명, 수집하려는 정보의 유형,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하려는 방법(정보를 수집하는 출처 포함) 및 정보의 용도.
- 참여 기관이 개인 식별 정보의 저장, 제 3자 공개, 보관 및 **파기**와 관련하여 따라야 하는 정책 및 절차 요약.



-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 및 34 CFR 파트 99A 의 시행 규정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여 이 정보와 관련된 부모 및 아동의 모든 프로그램 권리에 대한 설명, 해당 고지가 주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범위에 대한 설명.

## 기밀성 보호 조치

기록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참여 기관/제공자는 개인 식별 정보의 수집, 유지, 사용,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해당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합니다.
- 각 기관의 관계자 중 최소한 한 명은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DEA 및 FERPA 의 파트 C 에 적용되는 NC ITP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대한 교육이나 지침을 받습니다.
- 각 참여 기관은 공개 열람을 위해 기관 내에서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이름과 직위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참여 기관/제공자는 영유아 프로그램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되는 개인 식별 정보가 더 이상 해당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해당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통보가 전달된 후,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 연락처 정보(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서비스 코디네이터 및 조기 개입 제공자 이름, 종료 데이터(연령 및 나이, 종료 시 참여한 프로그램 포함)에 대한 영구 기록은 시간제한 없이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 분쟁 해결

참여 기관/제공자가 아동에 대한 신원 확인, 평가, 배치 또는 아동이나 가족에게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우려 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NC 영유아 프로그램은 조기 개입 서비스 코디네이터 또는 지역 CDSA 의 다른 담당자와 직접 대화하는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우려 사항에 대한 시기적절한 행정적 해결을 보장합니다. NC ITP 는 또한 중재, 적법 절차 심리, 주정부 불만 사항 처리 절차, 세 가지 공식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 중재

NC 영유아 프로그램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제공합니다. 중재는 적법 절차 심리 또는 주정부 불만 사항을 제기하기 전이나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귀하는 NC ITP 부모 중재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 주소에 우편으로 보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arly Intervention Section, Part C Director  
Division of Child and Family Well-Being  
1916 Mail Service Center  
Raleigh, NC 27699-1916



중재는 적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해야 합니다.

영유아 프로그램 중재 절차는 중재에 대해 다음을 보장합니다.

- 모든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
- IDEA 파트 C 에 따라 귀하의 적법 절차 심리 권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귀하가 가진 다른 권리를 거부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효과적인 중재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갖춘 공정한 중재자가 진행합니다.

NC ITP 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자격을 갖춘 중재자 명단을 관리합니다. 중재자는 무작위, 로테이션 또는 기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합니다.

**중재자의 공정성** – 중재자로 활동하는 개인은 조기 개입 부서, CDSA 또는 아동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당 개인의 객관성과 상충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중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이거나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NC ITP 는 회의 비용을 포함한 중재 절차 비용을 부담합니다.

중재 절차의 각 세션은 적시에 일정을 정해야 하며 분쟁 당사자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 당사자는 해결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중재 절차 중에 발생한 모든 논의 사항은 기밀로 유지되며, 파트 C 에 따라 지원을 받는 주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후속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항에 따른 서면으로 서명된 중재 합의는 관할권이 있는 모든 주정부 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NC ITP 는 귀하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와 만날 기회를 제공하여 중재의 이점을 설명하고 중재 이용을 장려할 것입니다. 중재는 시기에 상관없이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나 주정부 불만 사항의 요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재 요청과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또는 주정부 불만 사항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적법 절차

적법 절차에 대한 NC ITP 학부모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 주소에 우편으로 보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arly Intervention Section, Part C Director  
Division of Child and Family Well-Being  
1916 Mail Service Center  
Raleigh, NC 27699-1916



적법 절차에 대한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적법 절차 심리관이 임명되어 불만 사항 해결 절차를 시행합니다. 적법 절차 심리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파트 C의 조항과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필요성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다음 의무 사항을 수행합니다.
  - 불만 사항에 대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불만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서면 결정문을 포함하여 주정부 비용으로 절차에 대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 적법 절차 심리관은 '공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공정성은 적법 절차 심리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기 개입 부서, CDSA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아니며, 아동의 조기 개입 서비스나 보육 제공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적법 절차 심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과 상충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적법 절차 심리관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해당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적법 절차 심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주 또는 지역 주관 기관(조기 개입 부서 또는 CDSA),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 절차 심리에 참여하는 모든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법률 고문 및 개인을 동행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의 대질, 반대 심문 및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심리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부모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는 심리에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부모는 심리의 서면 또는 전자 녹취록 사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는 사실 조사 결과 및 결정에 대한 서면 사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적법 절차 심리는 부모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NC ITP는 부모의 적법 절차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적법 절차 심리를 완료하고 각 당사자에게 서면 결정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심리관은 부모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30일 기한을 초과하여 특정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리나 주정부 불만 사항에 따라 내려진 조사 결과 및 결정에 불만 사항이 있는 당사자는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 불만 사항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기 개입 부서와 장애가 있는 영유아의 부모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아동은 부모가 동의한 IFSP에 명시된 환경에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적법 절차 불만 사항이 파트 C에 따른 초기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경우, 아동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 주정부 불만 사항

NC 영유아 프로그램은 주정부 기관, 지방 기관 또는 개인 실무자가 연방 또는 주정부 영유아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조직(다른 주 포함)이 제기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되어 있어야 하며, 위반 혐의와 불만 사항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다음 주소로 NC ITP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Early Intervention Section, Part C Director  
 Division of Child and Family Well-Being  
 1916 Mail Service Center  
 Raleigh, NC 27699-1916

위반 혐의는 아동 및 가족 복지부 조기 개입 부서에 불만 사항이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조기 개입 부서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이나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만 사항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아동 및 가족 복지부 조기 개입 부서에 서명한 서면 불만 사항이 접수된 날 이후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심리관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연장을 허가해야 합니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연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불만 사항 접수일 이후 60일 이내에 조기 개입 부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조기 개입 부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독립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 불만 사항 제기자에게 불만 사항에 대해 추가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CDSA 또는 기타 조기 개입 기관/제공자에게 불만 사항에 응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조기 개입 부서의 재량에 따라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과 모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됩니다.
-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CDSA, 공공 기관 또는 조기 개입 제공자가 파트 C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 불만 사항을 제기한 사람에게 불만 사항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다루고 사실과 결론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주관 기관의 최종 결정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는 서면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 조기 개입 부서의 최종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기술 지원 활동, 협상, 필요한 경우 규정 준수를 위한 시정 조치가 포함됩니다.

최종 결정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 개입 부서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 불만 사항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가족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적합한 시정 조치(보상적 서비스나 금전적 보상 등)를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불이행, 및
- 영유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장애가 있는 모든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향후 서비스 제공.

조기 개입 부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시간제한의 연장을 허용합니다.

- 특정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 부모(또는 주정부 절차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이 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이나 조직)와 관련된 ITP, 공공 기관 또는 조기 개입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중재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접수된 불만 사항이 적법 절차 심리의 대상이기도 하거나, 여러 사안을 포함하고 그중 하나 이상이 해당 심리에 속하는 경우, 영유아 프로그램은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에서 다루고 있는 불만 사항의 모든 부분을 보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 절차 심리의 대상이 아닌 불만 사항의 모든 문제는 이 섹션에 설명된 기간 및 절차를 사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에서 제기된 문제가 동일한 당사자가 관련된 적법 절차 심리에서 이미 결정된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 적법 절차 심리의 결정은 이 문제에 대해 구속력을 갖습니다.
- 영유아 프로그램은 불만 사항 제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NC ITP 공공 기관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은 조기 개입 부서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 대리 부모

NC 영유아 프로그램은 다음의 경우 대리 부모를 임명합니다.

-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부모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실패한 경우.
- 해당 아동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에 따라 **주정부의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대리 부모는 영유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배정하려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아동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방법과 아동에게 대리 부모를 배정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ITP는 대리 부모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대리 부모가 지정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대리 부모는 다음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아동의 이익과 상충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아동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NC ITP의 CDSA나 주정부 기관의 직원이 아니며, 아동 또는 아동의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해당 직원이 아닙니다.

대리 부모는 다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아동에 대한 평가 및 사정.
- 평가, 사정, 정기적 검토를 포함한 아동의 IFSP 개발 및 구현.
-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 연방법이나 규정 또는 NC ITP 정책에 의해 확립된 기타 권리.



## 용어집

### 사정

사정이란 적격성을 갖춘 인력이 아동의 고유한 장점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IDEA 파트 C에 따라 아동의 적격 기간 동안 해당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데 적합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속적인 절차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아동과 아동의 가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초기 사정이란 아동의 첫 번째 IFSP 회의에 앞서 실시하는 아동 및 가족 평가를 말합니다.

###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는 IFSP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IFSP에는 IFSP에 명시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방 규정에서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본 파트(IDEA의 파트 C)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각 아동의 발달적 필요와 아동의 발달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의 파기

조기 개입 기록을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를 제거하여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 공개

NC ITP 기록 또는 해당 기록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접근, 공개, 이전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을 모든 당사자에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개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조기 개입 기록

조기 개입 기록이란 IDEA 파트 C 및 IDEA 파트 C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해야 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조기 개입 기록이라는 용어에는 34 CFR 파트 99(1974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규정, 20 U.S.C. 1232g(FERPA))의 "교육 기록"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록 유형이 포함됩니다.

###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

자격을 갖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전문가입니다.

### 평가

적격성을 갖춘 인력이 영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초기 및 지속적인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초기 평가란 아동의 최초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가족 주도 사정

가족의 자원, 우선순위, 우려 사항을 파악하고, 아동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인력이 실시하는 사정입니다.

###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

자격을 갖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조기 개입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가족을 포함한 IFSP 팀에서 개발했습니다,
-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학제 평가와 사정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 기능적 결과, 전략 및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 아동의 발달을 강화하고 아동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중재

등록된 아동의 부모, NC 영유아 프로그램 및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비공식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입니다. 중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양 당사자는 자유롭게 참여에 동의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합의를 체결하는 데 참여하고 합의를 승인해야 합니다. 중재는 부모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나 주정부 불만 사항 제기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다학제

다음과 같이 두 개 이상의 개별 전문 분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동 평가, 아동 및 가족 사정, 및 IFSP 팀(부모와 개별 전문 분야 내 2명 이상의 개인이 참여해야 하며 그중 한 명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여야 함).

### 모국어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모국어는 아동의 부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합니다.

평가 및 사정을 수행할 때 모국어는 해당 언어가 아동에게 발달상 적합한 경우 아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 자연스러운 환경

장애가 없는 동일 연령의 영유아나 아동에게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환경입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는 아동의 집이나 지역 사회 환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모

아동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위탁 부모(주법, 규정이나 주 또는 지역 기관과의 계약 의무로 인해 양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는 예외).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도록 허가받은 보호자 또는 아동을 위해 조기 개입, 교육, 건강 또는 발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허가받은 보호자(아동이 주정부의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주정부는 해당하지 않음).

아동과 함께 사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조부모, 의붓부모 또는 기타 친척 포함)를 대리하는 개인.

아동의 복지에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

대리 부모.



### 참여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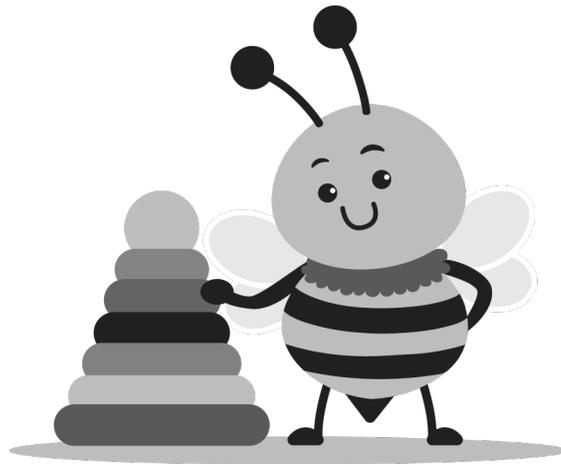
참여 기관이란 IDEA 파트 C 의 NC ITP 요구 사항과 특정 아동과 관련된 IDEA 파트 C 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모든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참여 기관에는 조기 개입 부서, CDSA, 조기 개입 제공자 및 파트 C 서비스(서비스 조정, 평가 및 사정, 기타 파트 C 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포함됩니다. 참여 기관에는 1 차 추천처(메디케이드나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프로그램과 같은 공공 기관)나 파트 C 서비스에 대한 자금원으로만 활동하는 민간 기업(민간 보험 회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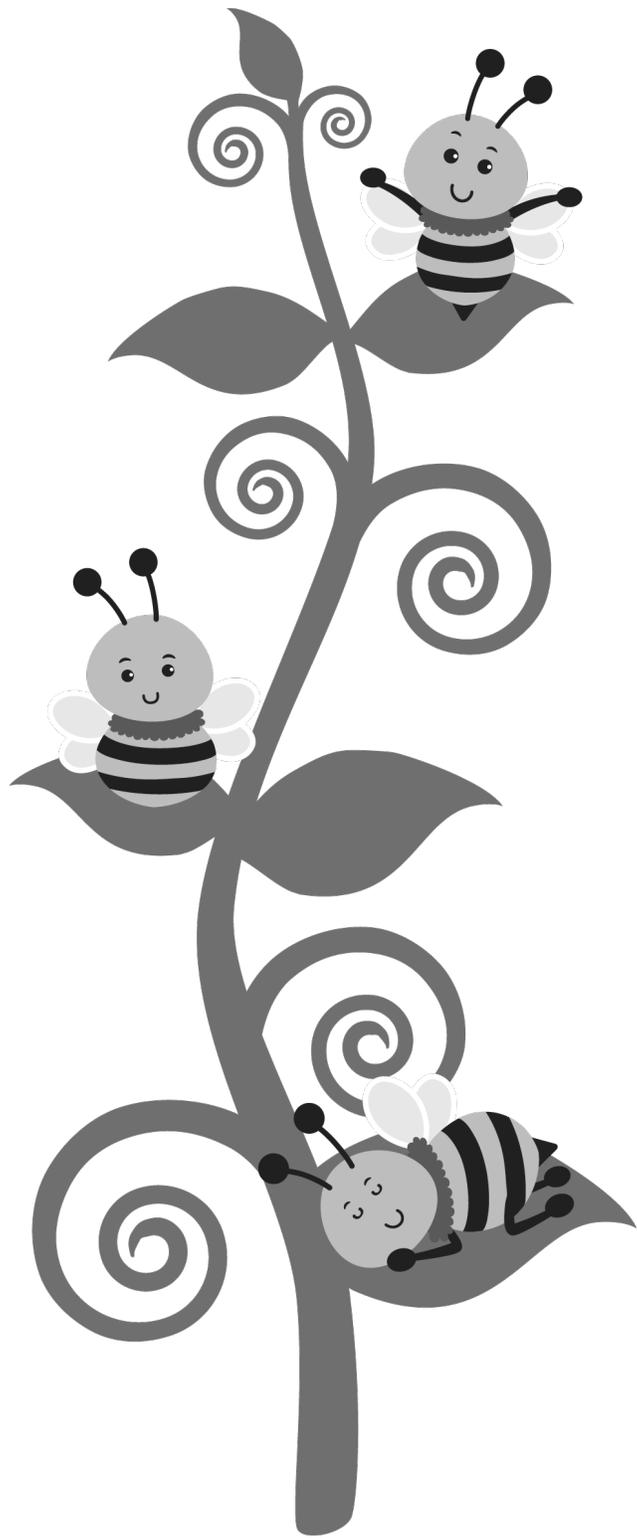
개인 식별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아동의 이름, 귀하의 이름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름.
- 아동 또는 가족의 주소.
- 아동이나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 식별자.
- 아동의 생년월일, 출생지, 어머니의 결혼 전 성과 같은 기타 간접 식별자.
- 아동의 신원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기타 정보 목록.
-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신원을 알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요청한 정보.

### 주정부의 보호대상자

주정부의 보호대상자는 카운티 사회복지부가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부여받고,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친부모나 양부모가 해당 아동을 알고 있고,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주정부의 보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노스캐롤라이나 영유아 프로그램



N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ivision of Child and Family Well-Being

NC 보건복지부  
아동 및 가족 복지부  
조기 개입 부서

[www.ncdhhs.gov](http://www.ncdhhs.gov)  
[www.ncdhhs.gov/division-child-and-family-well-being](http://www.ncdhhs.gov/division-child-and-family-well-being)  
[www.ncdhhs.gov/itp-bearly](http://www.ncdhhs.gov/itp-bearly)

복제 권한 부여됨

2013 년 4 월 | 2020 년 12 월 | 2022 년 5 월 | 2023 년 10 월 | 2024 년 7 월

보건복지부는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종교,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